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83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허 영·김동아·민병덕

박정현・조 국・조계원

이기헌 • 전용기 • 맹성규

박 정ㆍ이소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 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 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 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 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 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하여 산정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전소득 4. 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